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6
----------	------

제출일자: 2018. 9.

제출자: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5호)이 개정되어 그 세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나. 예술품등의 매각을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선정결과 공고(안 제4조)

나.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안 제5조)

다.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제6조)

- 라.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안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
- 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안 제13조 ~ 제15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개정안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8. 1. ~ 8. 21.(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징수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할 때 심의·결정으로써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중 6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군수는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3.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산매각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u> <u>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u>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u> <u>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u> <u>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 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징수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신 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 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할 때 심의·결정으로써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중 6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

	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군수는 매각 의뢰한 예술품 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경우에

<신 설>

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6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군

<신 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각대

<신 설>

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3.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
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
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
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

<신 설>

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 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 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산매각가액에 비하여 체납처 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 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 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 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 퇴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 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 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

<u>제4조</u>(시행규칙) (생략)	<u>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u> <u>제16조</u>(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12.26.]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7.]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3.27.]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문매각기관명				
매각대행 의뢰물품				
구분	품명	보관장소	비고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